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15 선고 2022나111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15 선고 2022나1111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가합645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곽호성

변론 종결2022. 7. 21.

판결 선고2022. 9. 15.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가합6458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9. 6. 3. C 주식회사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채권 1,332,7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1,092,2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그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어서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다르지 않는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아래서 제5행부터 제13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피고는 C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인 2019. 2. 8. C에 1,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돈을 C의 적극재산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 갑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2. 8. C에 1,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을 C의 K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의 위 예금계좌는 2019. 5. 27. 기준으로 잔고가 0원이 되었고, 달리 C이 위 돈을 2019. 6. 3.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C의 위 예금계좌에서 2019. 2. 8.부터 2019. 5. 27.까지 128,640,000원(= 송금액 131,240,000원 - 입금액 2,600,000원)이 L에게, 354,300,000원(= 송금액 1,000,000,000원 - 입금액 645,700,000원)이 U(L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V의 배우자)에게, 156,100,000원이 W(C의 대표이사)에게, 65,100,000원이 X 등에게 각 지급되었고, 나머지 595,000,000원은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합계액 1,324,789,041원[= 원금 1,300,000,000원 + 이자 24,789,041원¹⁾]을 C의 적극재산이 아닌 소극재산에 포함한다.

⑤ 피고는 C의 재무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2,097,500,000원은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C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중 65,100,000원을 X 등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4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으로 Y지역주택조합의 자금 1,020,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⑥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14,443,654,674원(= 12,924,538,154원 + 1,519,116,52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17,732,345,213원(= 13,099,642,145원 + 3,307,914,027원 + 1,324,789,041원)으로서 3,288,690,539원(= 17,732,345,213원 - 14,443,654,674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²⁾ (한편 피고는 C의 재무제표에 '기타 미지급금채무'로 계상된 386,132,000원은 S에 대한 채무와 중복하여 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C의 채무에서 제외해야 하고, 위 재무제표에 '선급금'으로 계상된 2,203,372,480원은 L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위 금액의 연 4.5%에 해당하는 351,200,000원 상당의 이자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김범진

판사이강은

- 1)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9. 2. 8.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9. 6. 3.까지 116일 동안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4,789,041원(= 1,300,000,000원 × 116일/365일 × 6%, 원 미만은 버림)
- 2)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 중 L에 지급한 128,640,000원과 U에게 지급한 354,300,000원을 각 C의 대여금으로 반영하고, W에게 지급한 156,100,000원과 X 등에게 지급한 65,100,000원을 각 W과 X 등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은 2,584,550,539원[= 적극재산 14,926,594,674원(= 14,443,654,674원 + 128,640,000원 + 354,300,000원) - 소극재산 17,511,145,213원(= 17,732,345,213원 - 156,100,000원 - 65,100,000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